

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

(위원회 구성 체계 변경, '18. 3. 5 시행)

□ 법적근거 및 목적

-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**식품안전정책을 종합·조정**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·운영('08.12.14~)

□ 구 성

- **위원회** :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 9명*, 민간위원** 10명 등 20명
 - *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무조정실장
 - **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
- **전문위원회** : 5개 분야로 구성·운영
 - * (기존) 화학물질/미생물 등 5개 분야 → (변경) 농/축/수산물/가공수입식품/소비영양안전
- **운영협의회** : 전문위원회 위원장, 간사 및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·운영
 - * (기존) 민간위원협의회 → (변경) 민·관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
- **사무기구** : 총 5명(국장 1, 과장 1, 사무관 2, 사무보조 1)

【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체계】



□ 역 할

- (위원회) 식품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·조정(법 제7조제2항*) 및 식품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및 조사·분석 요청(법 제14조)

- *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*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
- *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·규격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- *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
- *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
- *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- (전문위원회) 위원장 요청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수행(법 제12조) 및 식품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 및 조사·분석 요청(법 제14조)
- (운영협의회) 위원회의 효율적 안전심의를 위한 논의(운영세칙 제8조)

□ 임 기 : 2년(연임 가능)

- 제5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: 2017. 1. 23 ~ 2019. 1. 22
- 제5기 전문위원회 : 2017. 4. 24 ~ 2019. 4. 23